

창원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117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백경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익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5. 체결된 공유물 분할 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040000분의 394916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 3. 15. 접수 제14022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9가단120537)를 제기하여 2020. 6. 19. C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피고의 아버지이고, 2009. 10. 13. 소외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전 704㎡(이하, 환지 전 토지) 일부를 매수하되 지분(7,040,000분의 3,949,16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 5. 17. 그 매수하기로 한 부분 지상에 4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7. 7. 환지 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D로부터 매수하여 7,040,000분의 3,090,8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 2. 14. 그 지상에 5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환지 전 토지는 2015. 1. 23. 환지로 인하여 C 건물의 대지는 창원시 의창구 F 대 284.8㎡로, 피고 건물의 대지는 G 대 222.9㎡(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로 분필되었고, 각 토지에 관하여 환지 전 토지에 관한 C과 피고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마. 그런데 C과 피고는 2018. 3. 15. 각 환지 후 토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C 건물의 대지는 C 단독 소유로, 피고 건물의 대지 부분 피고 단독 소유로 공유물분할(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각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각자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경료받았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고, 창원시 의창구 F 대 284.8㎡은 C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환지 전 토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은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환지 전 토지 전체가 C의 재산이라 할 것인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시 환지 후 토지상의 자신의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처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이전해주었는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유물분할로 C에게도 피고 명의의 지분이 이전되었으므로, 공동담보 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C의 채무초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환지 전 토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지 전 토지 지상의 각 C, 피고 소유의 건물 부지가 각 분필 환지되었는데, 그 면적이 284.8㎡(C 건물 부지)와 222.9㎡(피고 건물 부지)이고, 이는 환지 전 토지의 지분 비율(C 7,040,000분의 3,949,167 vs 피고 7,040,000분의 3,090,833)과 일치하며, 따라서 피고와 C이 환지 후 각 토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피고가 C의 지분을 취득하고, C은 피고 명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른 가치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환지 전 토지의 피고 명의 지분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가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매도인의 선의인 경우임,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물건변동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것인바, 신탁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선주

별지